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784호)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4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2. 17

다. 상 정 일 자 : 2002. 12. 23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라. 의 결 일 자 : 2002. 12. 24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2.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2. 예산안	기정예산안	증 감	%
합 계	178,803,323	155,113,712	23,689,611	15.4
일 반 회 계	171,624,435	147,565,025	24,059,410	16.3
특 별 회 계	7,178,888	7,548,687	△369,799	△4.9
상 수 도 사 업	3,157,529	3,644,529	△487,000	△13.4
주 택 사 업	24,797	24,797	0	0.0
의료보호기금 운영	572,203	554,725	17,478	3.2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1,145,941	1,046,218	99,723	9.5
농공단지조성사업	990,558	990,558	0	0.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1,176,760	1,176,760	0	0.0
중소기업육성기금 운 용	111,100	111,100	0	0.0

3.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분	2002.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합 계	171,624,435	100.0	147,565,025	100.0	24,059,410	
세	지방세	12,015,000	7.0	10,480,000	7.1	1,535,000
	세외수입	12,773,134	7.4	12,834,423	8.7	△61,289
	경상적세외수입	5,283,907	(3.1)	5,402,978	(3.7)	△119,071
	임시적세외수입	7,489,227	(4.3)	7,431,445	(5.0)	57,782
입	지방교부세	62,095,000	36.2	58,830,000	39.9	3,265,000
	지방양여금	21,429,005	12.5	21,429,005	14.5	0
	조정교부금	3,881,428	2.2	2,951,000	2.0	930,428
	보조금	57,256,868	33.4	38,103,597	25.8	19,153,271
	국고보조금	40,760,098	(23.7)	24,874,782	(16.9)	15,885,316
	도비보조금	16,496,770	(9.7)	13,228,815	(9.0)	3,267,955
	지방채	2,174,000	1.3	2,937,000	2.0	△763,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	2002.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합 계	171,624,435	100.0	147,565,025	100.0	24,059,410	
세	경상예산	31,328,270	18.2	32,919,520	22.3	△1,591,250
	인건비	15,695,764	(9.1)	16,655,660	(11.3)	△959,896
	경상적경비	15,632,506	(9.1)	16,263,860	(11.0)	△631,354
	사업예산	129,726,903	75.6	107,132,773	72.6	22,594,130
출	보조사업	104,575,886	(60.9)	84,059,061	(57.0)	20,516,825
	자체사업	25,151,017	(14.7)	23,073,712	(15.6)	2,077,305
	채무상환	2,452,000	1.4	2,676,000	1.8	△224,000
	지방채상환	2,452,000	(1.4)	2,676,000	(1.8)	△224,000
	예비비등	8,117,262	4.7	4,836,732	3.3	3,280,530
	예비비	5,987,125	(3.5)	2,694,023	(1.8)	3,293,102
	기타	2,130,137	(1.2)	2,142,709	(1.5)	△12,572

4.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2.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합 계	7,178,888	100.0	7,548,687	100.0	△369,799	
세 입	지 방 세	0	0.0	0	0.0	0
	세 외 수입	6,851,562	95.4	6,727,261	89.1	124,301
	경상적세외수입	2,156,035	(30.0)	2,140,411	(28.4)	15,624
	임시적세외수입	4,695,527	(65.4)	4,586,850	(60.7)	108,677
	지 방 교 부 세	0	0.0	0	0.0	0
	지 방 양 여 금	0	0.0	0	0.0	0
	조 정 교 부 금	0	0.0	0	0.0	0
	보 조 금	327,326	4.6	331,426	4.4	△4,100
	국고보조금	269,022	(3.8)	272,022	(3.6)	△3,000
	도비보조금	58,304	(0.8)	59,404	(0.8)	△1,100
	지 방 채	0	0.0	490,000	6.5	△490,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2.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합 계	7,178,888	100.0	7,548,687	100.0	△369,799	
세	경 상 예 산	1,534,938	21.4	1,552,746	20.6	△17,808
	인 건 비	112,908	(1.6)	112,908	(1.5)	0
	경상적경비	1,422,030	(19.8)	1,439,838	(19.1)	△17,808
	사 업 예 산	4,163,985	58.0	4,607,265	61.0	△443,280
	보조사업	572,914	(8.0)	549,725	(7.3)	23,189
	자체사업	3,591,071	(50.0)	4,057,540	(53.7)	△466,469
	채 무 상 환	417,566	5.8	417,566	5.5	0
출	지방채상환	417,566	(5.8)	417,566	(5.5)	0
	예 비 비 등	1,062,399	14.8	971,110	12.9	91,289
	예 비 비	854,643	(11.9)	760,643	(10.1)	94,000
	기 타	207,756	(2.9)	210,467	(2.8)	△2,711

5. 계속비 사업조서 : 예산서 참조

6. 채무부담 행위조서 : 해당없음

7. 명시이월 사업조서 : 예산서 참조

8. 2002. 보조(국고, 도비, 양여금)사업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고보조	도비보조	도분양여금	군분양여금
경정예산안	계	110,088,852	62,830,156	16,465,785	3,324,846	27,468,065
	국비 (양여금)	62,189,103	40,760,098	0	0	21,429,005
	도비	16,496,770	6,021,850	8,208,528	2,166,392	100,000
	군비	31,402,979	16,048,208	8,257,257	1,158,454	5,939,060
기정예산안	계	89,728,375	44,563,969	14,147,495	3,548,846	27,468,065
	국비 (양여금)	46,303,787	24,874,782	0	0	21,429,005
	도비	13,228,815	4,225,521	6,668,902	2,166,392	168,000
	군비	30,195,773	15,463,666	7,478,593	1,382,454	5,871,060
증감	계	20,360,477	18,266,187	2,318,290	△224,000	0
	국비 (양여금)	15,885,316	15,885,316	0	0	0
	도비	3,267,955	1,796,329	1,539,626	0	△68,000
	군비	1,207,206	584,542	778,664	△224,000	68,000

10.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 기정예산 대비 15.6% 증가한 1,792억3,549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6% 증가한 1,720억5,660만6천원, 특별회계는 4.9% 감소한 71억7,888만8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사업이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와 특히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르는 국·도비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성질상 예산과목과 부기조정,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기정예산 1,551억 1,371만2천원에서 241억2,178만2천원이 증가한 총예산 1,792억3,549만 4천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2002년 기정예산액에서 244억9,158 만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기정예산액에서 3억6,97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191억6,144만6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4억8,700만원이 감소되어 총계 기정예산액 472억6,841만8천원에서 186억7,444만6천원이 증가된 659억4,286만4천원으로 39.5%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에서 금회 190억6,776만7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4억8,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831억5,857만4천원 보다 185억8,076만7천원이 증액 된 1,017억3,934만1천원으로 22.3%가 증액되었음.
-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에서 경상 적 세외수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되었으며, 특히 수해복구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 되었음.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은 절감하고, 수해복구 등 사업성 시설비의 추정성립 전 예산편성 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조정과 과목조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일부분의 자체 사업, 집행잔액 정리 등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됨.

- 하지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중 보조금 전액이 감액되는 부분과 사업추진을 위해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한 사업비를 금회에 전체 금액을 감액 편성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11. 질의 및 답변

- 문 : 고성시장내 방범시설 설치에 대하여 상세 설명바람
- 답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자치 단체장은 지원하도록 되었음.
시장활성화와 시장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임.
- 문 : 태양광 가로등 설치는 어디에 할 것인지?
- 답 : 야간 관광객등이 찾는 당항포관광지와 상족암 군립공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며, 보수등 관리의 원활을 위해 일정지역에 집중 설치할 것임.
- 문 : 와도발전기의 마력수가 얼마인가,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가?
- 답 : 70마력으로 그만한 예산이 필요함.
- 문 : 울대농공단지 진입로 토지매입에 대한 상세설명 바람.
- 답 : 농공단지 뒤편 도로일부가 개인사유지로 매입코자 함.
- 문 :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 2개소가 외부의 활용이 많지않는 곳으로 아는데 선정동기는?
- 답 : 사업비 50%의 자부담이 있어 동참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문 : 현재 활용 산불감시원 인원은 몇 명이며,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 답 : 전년도와 같이 70명이며, 도의 방침에 의거 당초 120명분 예산을 확보 했었음. 소요잔액을 삭감하는 것임.
- 문 : 덕암~관광농원간 도로 확포장 사업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바람.
- 답 : 전체 연장은 약200m인데 교량 1개소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비가 많음

- 문 : 암전천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길이, 기 개수사업은 언제 하였으며, 하천 정비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인가?
- 답 : 전체 길이 약4.8km이며, 하천공사의 하자 책임기간은 통상 2년임.
- ◇ 당부 : 기허 개수공사를 시행한 구간중 기초가 부실한 부분이 있는바 기초 불량부분을 사전파악하여 예방적 복구사업을 병행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문 : 도시과 세입예산에 있어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장 및 시설사용료 세입이 많이 감소되는 이유는?
- 답 : 제전마을쪽 주차장과 시설사용료가 임대계약에 의거 재무과 세입으로 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임.
- 문 : 고성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군비가 추가 편성되는 이유?
- 답 :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당초 편성시 적게 편성된 것을 군비 차액 추가 편성하는 것임.
- 문 : 신용 취약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개발계획 수립용액비가 감액편성되는 이유 설명바람.
- 답 : 당동만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2003년에 시행되는 국토이용 계획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시 통합 용역이 가능하므로 삭감하여 다른 용역에 사용코자 하는 것임.
- 문 :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토양검정수수료 수입이 상당액 감소되는 이유?
- 답 : 2001년기준 연간 약3천만원 수입이 있었으나(토양검정 1점당 15,000원) 남해화학에서의 검정의뢰 건수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른 세입감소되는 것임.
- 문 :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를 전체 감액편성 하는 이유 설명바람.
- 답 : 매입 예정부지 소유자 가족의 의견 불일치로 매입협약이 되지않아 매입불가로 감액 편성하는 것임.
- 문 : 쌀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비 국·도비 보조부분이 감액되고 전액 군비로 편성되는 이유는?
- 답 : 농업용수로 설치 사업으로 농지부서에서 보조분 사업은 기허 시행함에 따라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음.

- 문 : 고성군 농산물 브랜드 개발 학술용역비가 많이 감액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 아닌가?
- 답 : 당초 편성된 예산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 고성쌀 홍보용 샘플제작 사업비의 추가되는 예산액에 대한 설명?
- 답 : 내년 1월 실시되는 이봉주 훈련코스 마라톤대회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고성쌀 홍보용 샘플임.
- 문 : 도비로 지원되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 시범사업비가 감액편성되는 이유?
- 답 : 경남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계로 감액편성되는 것임.
- 문 : 태풍 루사 피해 축사복구 대상 농가는 어디 어디인가?
- 답 : 상리 1개소, 거류 1개소, 구만 1개소, 삼산1개소 등이며, 일부금액이 지원되는 것임.
- 문 : 2001년 축산종합시상 상사업비 사업선정은?
- 답 : 경남도에서 사업확정하여 지원함.

12. 토 론 : 없음

13. 심사결과

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군수제출안	심 사 사 항		수 정 안	비 고
		삭 감 액	증 액		
계	65,942,864	0	0	65,942,864	
일반회계	61,683,677	0	0	61,683,677	
특별회계	4,259,187	0	0	4,259,187	

나.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군수제출안	심 사 사 항		수 정 안	비 고
		삭 감 액	증 액		
계	101,739,341	0	0	101,739,341	
일반회계	97,480,154	0	0	97,480,154	
특별회계	4,259,187	0	0	4,259,187	

다. 예산삭감 및 수정현황

- 세입부분 : 변동없음
- 세출부분 : 변동없음